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42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소득월액 산정에서 사적연금소득 면제 요건 마련	2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4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8. 27.
- (3) 회 부 일 : 2025.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득월액 산정에서 사적연금소득 면제 요건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¹⁾에 따른 소득, 즉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사적연금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소득월액)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71조(소득월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u>

- 1)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현행	개정안
	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 외에 다른 과세소득이 없을 것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²⁾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제71조³⁾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⁴⁾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즉 연금소득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이하 “사적연금소득”)도 포함됨.

□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적연금소득과 달리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구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1998.9.14. 제정)은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등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했고, 2001년 1월 이전에는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 아니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01년 1월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적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었음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5) 2011년 6월 30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및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자 연금소득 등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임을 명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 22., 타법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9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생략)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신설>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미흡, 일시금 형태의 연금수령 조장 등을 사유로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임.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사적연금소득을 명시적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과 실제 집행 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은 채 행정적으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부과를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 및 제도적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⁶⁾.
- 지난 2022년 감사원은 공적연금소득과 달리 사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신 설>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만2천6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2천680점으로 한다.

6)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현재 미부과 중인 소득에 대한 단계적인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하며, 사적연금소득 역시 가입자가 얻은 종합소득 중 하나이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나, 미부과 중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부작용(은퇴자의 노후 소득 위축, 일시금 형태의 연금수령 조장 등) 우려 및 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소득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음⁷⁾⁸⁾.

□ 개정안은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사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려는 것임.

□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소득이 있음에도 법령 규정과 달리 특정 연금소득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점, 사적연금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부과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7) 감사원, 감사보고서(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2022.7. p.226-233

8) 감사원, 감사보고서(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2022.7. p.233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시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부과 시기 및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논의 등을 통해 사적연금소득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적립했던 사적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이중부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⁹⁾¹⁰⁾될 수 있고,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연금 수령 및 가입유인이 저해될 수 있는데, 이는 퇴직자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노인 빈곤을 완화를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적연금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행 정책과 상충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다음으로,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와는 별개로 개정안에 대하여 법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정안은 소득월액 산정 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면제 요건을 규정하면서 현행법 제71조제3항¹¹⁾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소득의 구체적 범위, 소득월액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

9) 보험연구원,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사적연금의 관계, 2022.10.

“○ 현행 건강보험법상 이연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로 인해 이중 보험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연금소득은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퇴직소득인 이연퇴직소득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됨
- 근로기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적립했던 사적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0)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 2022.9.

“참고로, 사적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직 중 월급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연말정산 시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 기납부했던 소득세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의 연금소득세 부과(과세이연(移延))에 대해서 이중부과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1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하는 규정으로, 현행 대통령령¹²⁾은 사적연금소득을 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장래에 사적연금소득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임입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경우 개정안은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 면제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안 제7조제4항제1호는 “연금소득 외 다른 과세소득이 없을 것”을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과세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를 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액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면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 달성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연금수급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 다만, 현재 사적연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39.8%, OECD 1위)과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건보료 미부과 중으로, 개정안과 같이 일정 금액 미만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및 일정 금액 이상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간 형평성, 국민 수용성, 사적연금 상품종류별 과세 여부·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와 관련하여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현재 미부과 중인 소득에 대한 단계적인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하며, 사적연금소득 역시 가입자가 얻은 종합소득 중 하나이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나, 미부과 중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부작용(은퇴자의 노후 소득 위축, 일시금 형태의 연금수령 조장 등) 우려 및 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은 사적연금에 대해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발의되었으나, 개인의 사적연금은 재직 시 보수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소득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연금수령 시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이중부과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일시금 선택 유인 등이 높아져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현재 사적연금 수급자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동일 연금소득이라도 상품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다양한 사적연금의 각 성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연구조사 그리고 정부의 노후보장 정책과 가입자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대내외적 의견수렴이 선행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사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제외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현행법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사적연금 소득범위에 대하여서도 추후 시행령 이하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대한의사협회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의료이용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있음에도 법령 규정과 달리 특정 연금소득을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경우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부과 원칙에도 어긋남
- 이에,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재정적 영향 분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503